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3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의자 : 고민정 · 박상혁 · 김준혁
김동아 · 김문수 · 진선미
박정현 · 정을호 · 김한규
허영 · 박지원 · 이용선
이병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학사 · 석사 ·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체계

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29조의4,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등).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을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통합된”을 “통합되거나 연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9조제4항 중 “제6항과”를 “제7항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2호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p>
<p><u><신 설></u></p>	<p>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p> <p>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p>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p>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33조(입학자격) ① (생 략)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 ③ (생 략)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제31조(수업연한)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입학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통합되거나 연계된-----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 설〉

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제59조(각종학교) ① ~ ③ (생략)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6항과 제50조를 준

제59조(각종학교) ① ~ ③ (현행 과 같음)

